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37
----------	------

2022년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찬성의원 13명)
- 나. 발 의 일 : 2022년 1월 20일
- 다. 회 부 일 : 2022년 1월 25일
- 라. 상 정 일 :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2월 1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현찬 의원)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021.12.16., 전부개정, 시행 2022.1.13.)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검사위원의 정수는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하며, 검사위원 중 서울 특별시의회의원은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2022년 122,180천원(20명분) 예산 편성
(노트북 임차, 검사위원 수당·교육비·여비 등)
- 다. 입법예고(2022. 1. 27. ~ 2. 8.)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태한)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관련 법령의 정비 사항 중 결산검사 위원(이하 “검사 위원”) 선임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 >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전부개정]

종 전	현 행
<p>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u>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u>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u>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u>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p>	<p>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u>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u>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u>검사위원은</u>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p>

○ 감사위원 선임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는, 지방재정 규모의 급증, 지방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건의 등 감사위원 선임 구간 확대 요구에 따라, 1994년 이후 유지되어 오고 있는 현행 감사위원 선임구간을 확대한 것임.

※ 지방재정 규모의 증가: (1994회계연도) 44.4조 → ('19회계연도) 245.3조(결산, 순계, 일반+특별)

※ 199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시도 5인 이내 → 5~10인(시·군·구 3인 이내 → 3~5인), 지방의원 1/3 초과불가 / 본 시행령 개정(2022.1.13. 시행) 전까지 유지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전부개정 설명자료(2021.12.)

- 한편,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의 환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결산의 기능(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 활용, 나.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 다.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라.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마. 예산집행 책임 해제

- 서울시 재정규모(2020년 세출 결산액 44조 4,099억원)를 감안할 때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회의 효율적인 결산검사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임.

- 한편,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장협의회”)의 결산감사위원 수의 선정기준·정수·선임방법·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제16대 시·도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2020. 4.24.)) 및 개정 촉구(2021.4.14. 제3차 임시회 등)) 등이 일부 수용(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54(2021.6.21.))된바 있음.

< 시·도의장협의회 건의안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 비교표 >

시·도의장협의회 건의안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u>수의 선정기준·정수·선임방법·운영</u>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u>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u>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u>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이나</u>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u>자</u>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u>지방의회 의원은</u> 검사위원 수의 <u>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② <u>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u>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u>사람</u>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u>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u> 검사위원 수의 <u>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③ 지방자치단체의 <u>상근</u>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u>상근(常勤)</u>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p>

- 다만, 시·도의장협의회회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건의안과는 달리 검사위원 선임구간을 확대(시·도의 경우 5~10명을 7~20명으로 확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검사위원 중 의회위원의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나. 결산검사 위원 정수 확대(안 제2조)

- 안 제2조는 시·도의 경우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 선임 가능 구간을 최대 20명까지 확대하는 등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의회 의원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 시·도 감사위원 수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

구 분	종 전	개 정
감사위원의 수	시·도 5인 이상 10인 이하	시·도 7명 이상 20명 이내
감사위원 중 지방의원의 수	감사 위원 수의 1/3을 초과 불가	전체 감사위원 수의 1/3 이하로 하며, 3명 초과 불가

※ 시행 2022.1.13., 2021.12.16. 전부개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 산·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위원의 정수) 결산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u>10명</u> 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u>감사위원 수의 3분의 1</u> 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감사위원의 정수) 결산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u>20명</u> 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u>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u>

※ 본 조례에서는 결산위원 구성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감사위원수를 선임구간이 아닌 특정인원수(현행 10명)로 규정(제258회 임시회, 2015. 4.2. 일부개정, 시행) 해오고 있음.

< 본 조례의 결산 감사위원 위원 수 규정 경과 >

제·개정일	위원수	조문 내용	시행령 상 감사위원 수	비고
1992.5. (제정)	5인	결산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5인 이내	
1994.7.	5인 이상 10인 이하	결산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5인 이상 10인 이하	
2015.4.	10명	결산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인 이상 10인 이하	
2022.2 (개정안)	20명	결산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u>20명</u> 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u>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u>	7명 이상 20명 이내 ('22.1.13. 시행)	본 개정안

- 한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021.12.21., 일부개정, 2022.1.1. 시행)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규모를 감안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정하여 지방의회에 선임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선임 의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41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처리일정의 협의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감안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정하여 선임을 의뢰하여야 함.
추천 및 선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본 조례 제3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지방자치법」 제73조)

-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검사위원 선임구간(7명 이상 20명 이하) 이내의 범위가 아닌 20명이라는 특정 인원수를 명시하여 검사위원 수를 규정하는 것과, 이를 의원발의를 통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지연(2021. 12. 16.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일정(2022. 4. 12.(화) ~ 5. 16.(월), 35일간 예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것임.

※ 재무국에서는 결산검사 위원 수의 급증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조례에 결산검사위원 수를 '20명'으로 명시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같이 '7명이상 20명이내' 선임가중 구간으로 규정하고, 연차적으로 3~5년에 걸쳐 2~4명의 검사위원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취지의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재무국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재무국 수정의견
제2조(감사위원의 정수) 결산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u>10명</u> <u>으로</u> 한다. 이 경우 서울특 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u>감사위원 수</u> <u>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u> <u>없다.</u>	제2조(감사위원의 정수) 결산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u>20명</u> <u>으로</u> 한다. 이 경우 서울특 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전체 <u>감사위</u> <u>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u> <u>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u> <u>다.</u>	제2조(감사위원의 정수) 결산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u>7명</u> <u>이상 20명 이내로</u>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은 전체 <u>감사위원 수의 3</u> <u>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u> <u>을 초과할 수 없다.</u>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감사위원 수를 범위로 정하면서, ‘그 수’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감사위원 수를 정하여 지방의회에 선임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 침해 여지도 있다고 보여짐.

< 광역자치단체 감사위원 수 규정 현황(2022.1.21.현재) >

연번	자치단체	감사위원 수	비고
1	서울특별시(안)	20명	특정 인원수
2	부산광역시	7명 이상 10명 이하	선임구간
3	대구광역시	7명 이상 20명 이하	선임구간
4	인천광역시	5명 이상 10명 이하	선임구간
5	광주광역시	5명 이상 10명 이하	선임구간
6	대전광역시	5명 이상 10명 이하	선임구간
7	울산광역시	10명	특정 인원수
8	세종특별자치시	7명	특정 인원수
9	경기도	10명	특정 인원수
10	강원도	9명 이내	선임구간
11	충청북도	5명 이상 10명 이하	선임구간
12	충청남도	5명 이상 10명 이하	선임구간
13	전라북도	7명 이상 10명 이하	선임구간
14	전라남도	5명 이상 10명 이하	선임구간
15	경상북도	5인 이상 10 이하	선임구간
16	경상남도	5명 이상 10명 이하	선임구간
17	제주특별자치도	5명 이상 10명 이하	선임구간

다. 기타(부칙)

-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획된 결산검사 일정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 의결에 따른 공포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 등 필요절차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일정(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및 이송 : 제305회 임시회(2022.2.7 ~ 2.21.)
- 조례 개정안 공포 : 2022.3월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제306회 임시회(2022.3.25 ~ 4.8.)
- 결산검사 : 2022. 4. 12.(화) ~ 5. 16.(월), 35일간(예정)
※ 검사일정은 향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서울시(교육청) 협의로 변경 가능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37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1월 20일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 경,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김희걸,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채유미, 최정순,
한기영 의원(13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021.12.16., 전부개정, 시행 2022.1.13.]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검사위원의 정수는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하며, 검사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0명”을 “20명”으로 하며,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u>10명</u>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u>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u>20명</u>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u>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u></p>